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[6574]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[6576]/ 담당 백영기[6581]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021호

시행일자 2017. 9. 1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'당뇨병 약제' 동일성분군 중복처방」 전산심사 실시 안내

1. 관련근거 :

가. 심사평가원(공지사항, 2017.9.7.)「'당뇨병 약제' 동일성분군 중복처방 전산심사 실시 안내」

나. 대의협(제813-2834호, 2017.6.30.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고시개정 안내(고시 제2017-109호)

2. 심평원은 상기 호로 당뇨병용제 일반원칙(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09호, '17.7.1)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 이상 투여(경구용 단일제)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한 바,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 및 심평원 홈페이지(알림-공지사항)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(심사정보-알림방-심사알림방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점검범위:「동일성분군」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의 중복 처방

* 동일 성분군 범주(상세내역: 고시의「대상약제」참조)

연번	성분군	성분명(일반명)
1	Meglitinide계	mitiglinide 등
2	Sulfonylurea계	glibenclamide 등
3	α-glucosidase inhibitor계	acarbose 등
4	Thiazolidinedione계	pioglitazone 등
5	DPP-IV inhibitor계	sitagliptin 등
6	SGLT-2 inhibitor계	dapagliflozin등

※ 적용일자: ‘17.11.1일 예정(전산심사 개발 완료시)

첨부: 당뇨병용제 고시(제2017-109호, 2017.7.1.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